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10월 14일
-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 및 수수료 조항을 개선하여 민원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어려움 발생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 및 수수료 조항의 개선으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행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구민의 협력을 규정함.
 - 안 제27조제1항제3호에서는 별표3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하였음.
 - 안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8호 서식을 교체하였음.
- 검토 결과
 - 2022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대형폐기물의 배출개수가 1,760만개로 당시 전국 인구가 5,100만명 정도로 이를 평균 계산하면 한 명당 3개 정도 배출한 것을 알 수 있음. 게다가 배출 중량도 42만톤 정도로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이 22.71g이 될 정도로 대형 폐기물의 발생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통계의 수치는 안 제5조에서 구민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조치에 따르는 것은 환경을 위한 당연한 책무로 타당한 규정이라 할 것임.
 - 한편, 안 제27조제1항제3호의 신설은 현재 시행중인 소형 가전제품의 수수료 미부과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보여짐.
 - 안 제27조제3항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규정 변경은 구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변경)의 마감일을 정확히 하여 수수료 환불 등에 대한 구민 편의를 제공한 사례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분리 배출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임을 구민들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정확한 규정 표현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2
----------	-----

발의연월일: 2024. 10. .

발의자: 유승용, 차인영, 이성수
이순우 의원(4인)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관련 배출신고서 양식 및 수수료 조항을 개선하여 민원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의 어려움 발생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0일”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로 한다.

3. 별표3에서 정하는 소형가전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1	자동판매기	음료·담배	14,000
	2		자가·소형	5,500
	3	TV	42인치 이상	6,000
	4		25인치 이상	3,600
	5		25인치 미만	3,000
	6	가스레인지		2,500
	7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800
	8		높이 1m 미만	2,400
	9	게임기·오락기	업소용	10,000
	10		50cm 이상	5,000
	11		50cm 미만	3,000
	12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13		높이 1m 미만	면제
	14	냉장고·김치냉장고	업소용	15,000
	15		700L 이상	13,000
	16		500L 이상	9,500
	17		300L 이상	4,800
	18		300L 미만	3,000
	19	에어컨 실외기	높이 1m 이상	2,000
	20		높이 1m 미만	면제
	21	에어컨	264㎡ 이상	9,000
	22		66㎡ 이상	6,000
	23		66㎡ 미만	4,000
	24	온풍기	264㎡ 이상	8,500
	25		66㎡ 이상	5,500
	26		66㎡ 미만	3,500
	27	복사기(영업용 프린터)	업소용	9,500
	28		높이 1m 이상	5,000
	29		높이 1m 미만	면제
	30	환풍기	업소용	2,500
	31		가정용	면제
	32	세탁기·건조기	20kg 이상	7,000
	33		10kg 이상	5,000
	34		10kg 미만	3,600
	35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3,500
	36		높이 1m 미만	면제
	37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3,500
	38		높이 1m 미만	면제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39	정수기	높이 1m 이상	5,000
	40		높이 1m 미만	면제
	41	온수기	높이 1m 이상	2,000
	42		높이 1m 미만	면제
	43	오디오본체	높이 1m 이상	5,000
	44		높이 1m 미만	면제
	45	세단기	높이 1m 이상	4,500
	46		높이 1m 미만	면제
	47	전자시계		면제
	48	선풍기	가정용	면제
	49	DVD,비디오(VTR)		면제
	50	오디오 스피커		면제
	51	전자레인지		면제
	52	전기밥솥·보온밥솥		면제
	53	전화기·휴대폰		면제
	54	청소기		면제
	55	카세트 라디오		면제
	56	커피포트		면제
	57	헤어드라이어		면제
	58	컴퓨터(본체,모니터)		면제
	59	컴퓨터 복합기		면제
	60	전기 비데		면제
	61	컴퓨터 키보드		면제
	62	탈수기		면제
	63	토스터기		면제
	64	팩시밀리		면제
	65	휴대폰 충전기		면제
	66	스캐너		면제
	67	프린터		면제
68	가습기		면제	
69	노트북 컴퓨터		면제	
70	녹즙기		면제	
71	다리미		면제	
72	모뎀		면제	
73	믹서기		면제	
74	전기히터		면제	
75	카메라		면제	
76	프로젝터		면제	
77	안마기		2,000	
78	안마의자		10,000	
79	발마사지 기계		4,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80	TV 받침대	길이 120cm 이상	5,000
	81		길이 120cm 미만	3,000
	82	화장대	거울, 의자별도	3,600
	83	거울	1㎡ 당	2,000
	84		1㎡ 미만	1,000
	85	의자	3인용	6,000
	86		2인용	4,500
	87		1인용	3,000
	88		좌식의자	1,000
	89		바퀴 달린 의자 (대형)	5,000
	90		바퀴 달린 의자 (소형)	3,000
	91	쇼파(안락의자)	4인용	10,000
	92		3인용	7,500
	93		2인용	6,000
	94		1인용	3,000
	95		스툴	2,500
	96	서랍장	5단 이상	5,000
	97		4단 이하	3,000
	98	신발장	높이 1.5m 이상	4,000
	99		높이 1.5m 미만	3,000
	100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900
	101		가로 90cm 이상	11,900
102	가로 90cm 미만		7,000	
103	스탠드 옷걸이		2,000	
104	비닐 옷장		2,000	
105	행거	2단 행거	3,000	
106		1단 행거	2,000	
107	진열대·선반(목재,철재)	1㎡ 당	3,000	
108	캐비닛	90cm × 180cm	4,000	
109		4단 이상	3,600	
110		3단 이하	2,400	
111	장식장	높이 180cm 이상	10,000	
112		높이 120cm 이상	5,500	
113		높이 120cm 미만	4,000	
114	찬장	폭 130cm 이상	10,000	
115		폭 120cm 이상	7,000	
116		폭 90cm 이상	4,000	
117		폭 90cm 미만	3,500	
118	싱크대	상판길이 120cm 이상	6,000	
119		상판길이 120cm 미만	4,000	
120		상판(대리석) 120cm 이상	12,000	
121		상판(대리석) 120cm 미만	10,000	
122	개수대		4,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123	식탁	6인 이상	5,000
	124		4인 이하	4,000
	125		2인 이하	3,000
	126	대리석 식탁	6인 이상	12,000
	127		4인 이하	8,000
	128	대리석 상판	6인 이상	8,000
	129		4인 이하	5,000
	130	탁자	협탁	2,000
	131		응접탁자	2,000
	132		2인용	3,000
	133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134		10인용 미만	6,000
	135	교자상·밥상	4인 이상	2,500
	136		3인 이하	1,000
	137	책상(유리별도)	서랍 없음	3,000
	138		길이 120cm 이상	5,000
	139		길이 120cm 미만	3,000
	140		편수(한쪽서랍)	5,000
	141		양수(양쪽서랍)	8,300
	142		H형 책상 (상판, 책장, 서랍포함)	10,000
	143		독서실 책상	5,000
	144	책상 상판	2,000	
	145	유리	1㎡ 당	2,000
	146	책장	90cm × 180cm 이상	9,000
	147		90cm × 180cm 미만	5,000
	148		3단 이하 (길이, 높이 100cm 이하)	2,000
	149	탁상용 책꽂이	1단 당	1,000
	150	침대	2인용 세트	16,000
	151		1인용 세트	12,000
	152		2인용 매트리스(라텍스)	8,000
	153		1인용 매트리스(라텍스)	6,000
	154		2인용 침대틀	8,000
	155		1인용 침대틀	6,000
156	2인용 접이식		10,000	
157	1인용 접이식		7,000	
158	쇼파 겸용 침대		13,000	
159	의료용 침대		12,000	
160	돌침대(옥·황토 침대)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161			1인용 돌 옥 황토	25,000
162	침대 헤드	2인용 이상	3,000	
163		2인용 미만	2,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164	렌지대 수납장		4,000
	165	문갑		3,600
	166	문짝	1개당	2,000
	167	병풍	2폭당	1,000
	168	창문	1㎡ 당	2,000
생활용품류	169	가방(캐리어)	골프채 가방	3,000
	170		높이 50cm 이상	2,500
	171		높이 50cm 미만	1,500
	172	빨래 건조대	길이 1m 이상	2,000
	173		길이 1m 미만	1,000
	174	식기 건조대		1,000
	175	다리미판		1,000
	176	도마	업소용	2,000
	177		가정용	1,000
	178	항아리	높이 50cm 이상	2,000
	179		높이 50cm 미만	1,000
	180	화분	높이 50cm 이상	1,500
	181		높이 50cm 미만	1,000
	182	쓰레기통	사무실·옥외용	2,000
	183		가정용	1,000
	184	게시판(화이트보드)	가로 1m 이상	2,000
	185		가로 1m 미만	1,000
	186	액자	높이 1m 이상	3,000
	187		높이 50cm 이상 ~ 1m 미만	2,000
	188		높이 50cm 미만	1,000
	189	어항(수족관)	가로 1m × 높이 60cm 초과	6,000
	190		가로 1m × 높이 60cm 이하	4,000
	191	장판	3.3㎡ 당	1,000
	192		전기장판(2인용)	3,000
	193		전기장판(1인용)	2,000
	194		옥, 자석, 온수 장판 (2인용)	7,000
	195		옥, 자석, 온수 장판 (1인용)	4,000
	196		카펫	3.3㎡ 당
	197	발판매트		1,000
	198	자석매트	매트리스 가격 준용	동일
199	이불	겨울용(솜이불)	2,000	
200		여름용	1,000	
201	토퍼(요)	2인용(두께 10cm 이하)	6,000	
202		1인용(두께 10cm 이하)	4,000	
203	돛자리(대자리)	1㎡ 당	1,000	
204	방석	겨울용	1,000	
205		여름용	5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생활용품류	206	베개(라텍스 베개)		1,000
	207	블라인드(자바라)	1㎡ 당	1,000
	208	커튼	1㎡ 당	1,000
	209	커튼봉		1,000
	210	재봉틀		2,500
	211	벽시계	길이 1m 이상	2,500
	212		길이 1m 미만	1,000
	213	조명기구(모든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214		폭, 높이 1m 미만	1,000
	215		상들리에	2,000
	216	형광등 틀		1,000
	217	자전거	성인용	3,600
	218		아동용 2륜	3,600
	219		아동용 3륜	2,400
	220	킥보드		2,000
	221	테니스 라켓	개당	1,000
	222	배드민턴 라켓	개당	500
	223	골프채	개당	2,000
	224	등산스틱		1,000
	225	아령	1kg 당(가정용)	500
	226	텐트	4인용 이상	4,000
	227		4인용 미만	3,000
	228	헬스기구	런닝머신(수동)	15,000
	229		헬스자전거	7,000
	230		스텝퍼	4,000
	231		шит업보드	4,000
	232	탁구대		7,000
	233	볼링공		3,000
	234	스키	스키(부츠별도)	3,000
	235		스키부츠	2,000
	236	스케이트	1켤레	2,000
	237	스노우보드		3,000
	238	피아노	일반	17,900
	239		디지털	5,500
	240	오르간	일반	4,800
	241		전자식	3,000
	242	악기	기타, 바이올린 등	2,000
	243	바둑판	두께 60mm 이상	2,000
	244		두께 12mm 이상	1,000
	245	우산	일반용	1,000
	246	파라솔	모든 규격	2,000
	247	신발	1켤레	5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생활용품류	248	대걸레(빗자루)		1,000
	249	욕실 수납장	1㎡ 이상	4,000
	250		1㎡ 미만	3,000
	251	세면대		3,000
	252	욕조	일반용	6,000
	253	변기		4,500
	254	난로	석유난로	2,500
	255		가스난로	2,500
	256		전기난로	면제
	257	수도호스	10m 당	1,000
	258	보일러	16kcal/h 이상	10,000
	259		16kcal/h 미만	7,500
	260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261	물탱크	1톤당	14,000
	262		0.5톤 이상	6,500
	263		0.5톤 미만	3,000
	264	아이스박스	50L 이상	3,000
	265		30L 이상	2,000
	266		30L 미만	1,000
	267	배기후드		2,000
	268	고무통	지름 1m 이상	5,000
	269		지름 50cm 이상	3,000
	270		지름 50cm 미만	2,000
	271	쌀통		3,600
	272	드럼통		5,000
	273	죽부인		1,000
	274	평상	1.5m × 1.5m 이상	7,000
	275		1.5m × 1.5m 미만	5,000
	276	컬러박스(공간박스)	3단 이상	2,000
	277		2단 미만	1,000
	278	CD꽂이		2,000
	279	체중계	가정용	1,000
	280	전기 판넬	3.3㎡당	2,000
	281	휠체어		3,000
282	개집		3,000	
283	켓타워	높이 1m 이상	5,000	
284		높이 1m 미만	3,000	
285	금고(가정용)	가장 긴면 1m 이상	8,000	
286		가장 긴면 1m 미만	5,000	
유아용품류	287	유아용 식탁의자	하이체어	3,000
	288	유아용 의자(쇼파)	1인용	1,000
	289	아기 옷장		3,000
	290	유아용 침대		3,000
	291	유아용 매트리스		3,000
	292	어린이 2층 침대		15,000
	293	인형(대형)	1개당	2,000

유형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
유아용품류	294	장난감	길이 50cm 이상	2,000
	295		길이 50cm 미만	1,000
	296	놀이매트	1㎡ 당	1,000
	297	보행기		2,000
	298	유모차	대형/디럭스	3,000
	299		휴대용	2,400
	300	유아용 목마		1,000
	301	유아용 안전문	1짝당	2,000
	302	카시트		2,000
	303	유아용 욕조		3,000
	304	유아용 미끄럼틀		5,000
	305	유아용 자동차		3,000
	306	유아용 그네		1,000
	307	트램블린		1,000
기타	308	파티션	1㎡ 당	2,000
	309	석고보드	1㎡ 당	2,000
	310	목재 파레트	1㎡ 당	2,000
	311	마네킹	1m 이상	5,000
	312		1m 미만	3,000
	313	타이어	지름 110cm 이상	11,000
	314		지름 60cm ~ 110cm	5,000
	315		지름 60cm 미만	3,000
	316	간판(입간판)	40cm × 100cm 당	4,000
	317		가로 1m 이상	2,000
	318		가로 1m 미만	1,000
	319		고무통 입간판	5,000
	320	에어풍선		3,000
	321	화환		3,000
	322	방충망	1㎡ 당	2,000
	323	천막	길이 6m 이상	7,000
	324		길이 6m 미만	5,000
	325	폐소화기		면제
	326	폐태양광 패널(가정용)	180cm × 100cm 이하	7,000
	327	공기청정기 필터	모든규격	1,000
328	폐목재	1kg 당	200	
329	폐플라스틱	1kg 당	200	

-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한다.
-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폐기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신고할 필요가 없는 품목으로 5개 미만 배출시 대형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m 미만의 공기청정기, 에어컨실외기, 복사기, 환풍기(가정용),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온수기, 오디오본체, 세단기, 전자시계, 선풍기(가정용), 비디오, DVD, 오디오 스피커,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화기, 청소기, 카세트 라디오, 커피포트,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복합기, 전

기 비데, 컴퓨터 키보드, 탈수기, 토스터기, 팩시밀리, 휴대폰 충전기, 스캐너, 프린터, 가습기, 녹즙기, 다리미, 모뎀, 믹서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카메라, 프로젝터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민의 책무) <u>영등포구민</u> (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구민의 책무) <u>영등포구민</u> (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u>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③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배출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p>	<p>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별표3에서 정하는 소형가전 제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폐기물이 이미 수거 되었거나, 신고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④ · ⑤ (생략)

-----.

-----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④ · ⑤ (현행과 같음)